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49호

2020. 5. 18.

건명	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회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5. 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5. 8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#### 가.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행정재산(건물)을 조직 및 단체에 사용·수익허가 및 갱신 하는 사항 신설
- 생략사항 금액기준을 대장가액(취득가격)에서 기준가격(공시지가)으로 변경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신설

#### 나. 행정재산 사용·수익허가시 절차 명시(안 제20조)

다. 청사의 부지에 관한 사항(안 제46조)

-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

라.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(안 제63조의 2)

-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조항 삭제

□ 검토의견

-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 및 일부 운영상의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50호

2020. 5. 18.

건명	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(회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5. 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5. 8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#### [일반회계]

- 물빛 복합문화센터 건립
  - 가야곡면 조정리 495-6외 2필지 3,868㎡(토지), 2,177㎡(건물)
- 은진면 용산리 게이트볼장 조성
  - 은진면 용산리 400-1번지 2,223㎡(토지)
-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
  - 화지동 137번지의외 2필지 681㎡(건물)
-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및 전망시설 조성
  - 탑정호수 내 음악분수 1,680㎡(공작물), 전망데크 1,800㎡(공작물)

-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
  - 연무읍 죽평리 229-1외 13필지 29,878㎡(토지), 2500㎡(건물)
- 기호유교문화 공간조성
  - 강경읍 황산리 100-7번지의 6필지 3,425㎡(토지)

#### [주차장특별회계]

- 연무 공영주차장 조성
  - 연무읍 동산리 894-149번지의 4필지 2,628㎡(토지)
- 강경 채산1리 공영주차장 및 쉼터 조성
  - 강경읍 채산리 307번지의 4필지 1,828㎡(토지)

#### □ 검토의견

-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51호
----------	------

2020. 5. 18.

건명	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(회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5. 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5. 8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(원안가결, 2018년 12월 21일)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(취득)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#### [일반회계]

#### ○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변경

- 당초 : 연산면 청동리 127-27외 3필지 3,886㎡(토지), 2,614㎡(건물)
- 변경 : 연산면 청동리 127-27외 5필지 5,280㎡(토지), 2,614㎡(건물)

### □ 검토의견

- 공유재산의 변경(취득)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52호
----------	------

2020. 5. 18.

건명	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(회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5. 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5. 8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6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(원안가결, 2016년 4월 18일)하였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(취득) 사유가 발생하여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#### [일반회계]

#### ○ 강경산 문화공간 건립 변경

- 당초 : 강경읍 북옥리 139-2외 14필지 2,319.6㎡(토지),  
2,646.6㎡(건물·시설물)
- 변경 : 강경읍 북옥리 139-2외 19필지 3,231㎡(토지),  
3,377㎡(건물·시설물)

## □ 검토의견

- 공유재산의 변경(취득)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